

제179회 거창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1. 12. 21. (수) 10:00~

# 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

=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 등 4건 =

산 업 건 설 위 원 회

## 【 목 차 】

1. 거창군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2.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3.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 ..... 11
4. 거창군 천적생태과학관 위탁운영 동의안 ..... 15

# 거창군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1. 11. 16.
- 나. 발 의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1. 11. 1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1년 12월 15일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우리 군의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한 숙련기술자 중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대상으로 최고 장인을 선정·포상하여,
- 숙련 기술자가 실질적으로 우대받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군의 숙련기술 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숙련기술자, 최고장인에 대하여 정의함
  - ※ 「기능장령법」에서 「숙련기술장령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용어 및 내용을 반영함

- 최고장인의 선정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제6조)
  - 최고장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안 제3조)
  - 같은 분야 및 직종에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사람으로 숙련기술의 수준 및 품성 등이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안 제4조)
  - 최고장인으로 선정되면 매년 10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급(안 제6조)
- 최고장인심사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제11조)
  - 최고장인 선정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안 제7조)
- 숙련기술자의 우대 및 후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 군수는 최고장인이 군의 산업발전과 후진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후원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이 조례안은 우리 군의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한 숙련기술자 중 장인 정신이 투철하고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대상으로 최고장인을 선정·포상함으로써,

나. 숙련기술자가 실질적으로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공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군의 숙련기술 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거창군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신규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제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됨.

다.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제2조(목적, 정의)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한 사항으로 필요 조항이며,
- 안 제3조~제6조(최고장인의 선정, 최고장인의 자격요건, 최고장인의 추천, 최고장인에 대한 지원)는 최고장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서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제11조(최고장인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 회의, 수당 등)는 최고장인심사위원회회의 설치·운영방법과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책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됨.
- 안 제12조(숙련기술자 우대 및 후원)는 숙련기술자에 대한 우대 및 후원 방법을 명시한 사항으로 필요조항으로 판단됨.
-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해당없음

6.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1. 11. 16.
- 나. 발 의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1. 11. 1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1년 9월 2일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11. 09. 16.)됨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시험·연구시설 및 건조·보관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건폐율을 50% 이내로 하여
- 해당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및 용어 등을 법령에 맞게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개발행위 허가 시 신청지역에 도로와 상·하수도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도로와 상·하수도를 연결하고 도로를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제1호)

- 생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이나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시험·연구시설, 농산물의 건조·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50% 이내로 완화함(안 제53조)
-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종교집회장의 제한규정을 삭제함(안 별표 17)
  - 종교 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 종교 집회장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이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11. 9. 16.)됨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시험·연구시설 및 건조·보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50%로 완화하고,

나.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거창군 계획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제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됨.

다.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현행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는 시행령 제39조의2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 시 신청지역에 도로와 상·하수도 등이 미설치된 경우 신청인이 도로와 상·하수도를 연결하고 도로로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는 시행령 제84조 제7항 및 제8항 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 현행 제74조(과태료의 징수)는 시행령 제134조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안 [별표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종교집회장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종교집회장의 난립이 우려되나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사항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5. 토론 요지: 해당없음

#### 6. 수정안 요지

- 거창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 중,
  - 별표14, 별표17, 별표18, 별표2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를
  - 별표3, 별표14, 별표17, 별표18, 별표2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별표3삽입)
-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 7. 심사결과: 수정가결

####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표14, 별표17, 별표18, 별표2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별표3, 별표14, 별표17, 별표18, 별표20</u>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li> </ul>

※ 별표3: 따로붙임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3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와 옥외철타를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 및 마목의 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소매시장·상점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동호 가목의 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한다), 다목, 라목, 바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의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기록매체 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연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형 공장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가목, 사목, 차목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동호 가목, 사목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25호의 발전시설

#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1. 11. 16.
- 나. 발 의 자: 조기원 의원 외 3명
- 다. 회부일자: 2011. 11. 1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1년 9월 2일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 공공청사 등에 대한 빗물 설치가 의무화 되고, 물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 빗물을 새로운 수자원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빗물이용을 활성화 시켜 향후 예상되는 물부족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물의 재이용”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군수의 책무규정을 정함(안 제3조)
  -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시설의 설치관리에 노력
  - 공공건축물을 건축할 때나 대단위 개발계획 수립 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권장
-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수립(안 제4조)
  -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권장사항 규정안 계획서를 제출받아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설치확인서 발급규정을 정함(안 제5조)
-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을 정함(안 제6조)
- 중수도의 설치·관리 규정을 정함(안 제8조)
  -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 규정
- 빗물 이용 시 수도요금을 최고 60%범위 내에서 감면하고, 중수도의 감면 규정을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규정토록 함(안 제11조)
- 물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물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 규정을 정함(안 제10조)
- 물의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토록 함(안 제20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이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0. 6. 8. 제정) 시행으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에 대한 빗물 재이용 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고,

나. 물의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을 새로운 수자원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빗물이용을 활성화 시켜 향후 예상되는 물부족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을 신규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됨

다.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제2조(목적, 정의)는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한 사항으로 필요조항이며
- 안 제3조(군수의 책무)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명시한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4조~제5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 및 권고대상)는 물 재이용관리계획의 수립방법과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 및 권고대상 시설물을 규정한 사항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심사됨
- 안 제6조~제7조(설치신고 및 확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방법과 빗물이용시설의 시설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타당하며
  - 안 제8조(중수도의 설치·관리)는 중수도 설치 권장의 범위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고
  - 안 제9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시설의 규모와 공급량 등을 명시한 사항으로 부합되며
  - 안 제10조~제11조(재정지원 등,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내용과 수도요금과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방법을 나열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12조~제13조(빗물사용수량 인정 배제, 감면 수도요금의 환수)는 사용량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 및 감면 수도요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부합함
  - 안 제14조~제19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과 여비, 운영세칙)는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방법, 위원장의 직무, 회의방법, 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방법, 운영 세칙 등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함.
  - 안 제20조 ~제21조(시범사업 발굴, 교육·홍보)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교육·홍보사항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해당없음
6.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위탁운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1. 11. 16.
- 나. 발 의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1. 11. 1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1년 12월 15일

## 2. 제안설명 및 이유

### 가. 제안이유

-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천적 교육 및 지역의 과학문화 확충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성을 갖춘 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시 설 명: 거창천적생태과학관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819-10번지 사과테마파크 내
- 규 모: 연면적 1,040㎡ (지하1층, 지상3층)
  - 천적전시시설 336㎡, 연구 및 사육시설 267㎡, 교육관 81㎡, 기타 356㎡
- 주요시설
  - 교육장(1층): 친환경영농 천적활용 교육

- 전시실(1층): 천적의 이해, 천적의 종류, 천적의 관찰
- 전시실(2층): 천적의 활용, 한국의 천적곤충, 천적의 체험
- 천적사육 및 연구실(3층): 체험 및 교육용 천적곤충 연구 및 사육
- 위탁대상 업무
  - 시설운영: 생태관내의 관련 시설물의 운영 및 콘텐츠 유지관리
  - 전시운영: 천적 콘텐츠 전시물의 기획 및 전시, 유지보수
  - 곤충 종 사육 및 유지: 전시용, 교육용 살아있는 곤충의 상시유지
- 위탁기간: 5년 이내 (최초 2년)
- 위탁운영 방식
  - 시설관리, 전시운영, 천적교육 일체 위탁
  - 천적과학관 운영수입 일체는 거창군 수입처리
  - 향후 프로그램 운영, 이용자 추이 등을 감안 인력 조정 운영
- 소요예산
  - 연간 150,000천원(군비) 이내 편성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금번 제출된 거창천적생태과학관 위탁운영 동의안은 「거창 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 제1항에서 군수는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는 조항과,
- 나.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서
- 다. 본 건은 천적생태에 대한 체험 및 학습의 기회와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자연생태계 보호의식을 고취하고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법을 실천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이므로

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천적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해당없음

6.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위탁 시 위탁계약 내용에 천적사육 및 농가  
보급 내용을 삽입(주문)